



바젤위원회의 자본규제 완화 조치

이해랑 연구원

■ 2014년 1월 12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레버리지비율¹⁾과 유동성비율²⁾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.

- 바젤위원회는 익스포저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완화함.
 - 바젤위원회는 2015년부터 각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을 발표하고, 2018년 1월부터는 각 은행들이 최소 3% 이상의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도록 함.
- 또한 당초 일부국가에만 적용하고자 했던 「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약정」(RCLF: Restricted-use Committee Liquidity Facility)을 모든 국가의 고유동성자산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여 유동성 비율 규제 역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.

■ 바젤 위원회의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은행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, 이로 인해 레버리지 비율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은행들의 자산매각이나 자본확충 압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- 바젤위원회의 건전성규제에 대하여 은행들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.
- 바젤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형 글로벌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이 평균적으로 현재보다 약 3.8%에서 4.0%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- 한국은행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국내은행들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³⁾ 준수 부담이 완화되는 등 국내 은행들 역시 규제이행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.

- 1) 레버리지 비율: 바젤Ⅲ의 리스크에 기반하고 있는 자본비율규제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리스크에 기반 하지 않은 레버리지비율(부채비율)임.
레버리지 비율 = 자본(Tier 1)/ 익스포저
- 2) 유동성 비율: (Liquidity Coverage Ratio): 30일간 지속되는 위기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지표임.
 - 고유동성자산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현금창출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현금, 중앙은행 예치금, 국공채, AA-등급 이상의 회사채, 커버드 본드 등으로 정의되었음.
- 3) 순안정자금조달비율: 금융기관의 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1년 동안 최소한으로 필요한 안정적 자금조달 금액에 대한 가용 안정적 자금 조달 금액의 비율
순안정자금조달비율 = 필요안정적 자금조달금액/ 가용안정적 자금조달금액 ≥ 100%

■ 바젤위원회는 자기자본비율의 항목별 규제 기준치 상향, 완충 자본 및 레버리지 규제 신설 등을 통하여 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,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(IAIS)도 글로벌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.

- 바젤위원회는 기존의 BIS의 자기자본비율 중 보통주 자본비율과 기본자본 비율을 높이고, BIS 자기자본과는 별도의 보통주 자본의 추가 축적, 3% 이상의 레버리지 비율 유지 등의 규제를 통해 은행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옴.
-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(G-SII)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회사(IAIG)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있음.

■ 바젤위원회의 은행 자본규제 완화조치는 보험업의 자본규제 강화 추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.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규제강화 추세는 은행업의 자본규제 강화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.
- 따라서 바젤위원회의 레버리지 비율과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는 보험산업 자본규제 강화 추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.

(한국은행, Financial Times, 보험연구원)